

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한기영 의원 (대표) 발의)

의안 번호	1090
----------	------

발의년월일 : 2019년 10월 16일

발 의 자 : 한기영 의원 (1명)

찬 성 자 : 강동길, 김상진, 김인호, 김태호,
김호평, 문병훈, 오중석, 이경선,
이동현, 이현찬, 추승우 의원 (11명)

1. 제안이유

- 난임 진단으로 ‘난임 시술’을 받은 직원 및 그 배우자를 지원하여 저출산 문제해결과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.
- 난임으로 인한 우울증이 직원의 정신건강 문제를 야기함으로써 난임 직원에 대한 서울시 차원에서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함.

2. 주요골자

- 서울시 소속 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의 난임 진단에 의한 시술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.(안 제7조 제14호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규 : 없음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참조

다. 기 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4. 소속 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의 난임 진단에 의한 시술비 지원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7조(후생복지사업의 시행)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직원 후생 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. 단, 제9호의 경 우는 시청매점의 수익금을 활용 하여 지원할 수 있다.</p> <p>1. ~ 13. (생 략)</p> <p><신 설></p>	<p>제7조(후생복지사업의 시행) 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1. ~ 13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14. 소속 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 의 난임 진단에 의한 시술비 지원</u></p>

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-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7조(후생복지사업의 시행) 제14호 신설에 따라 소속 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의 난임 진단에 의한 시술비를 지원함으로써 비용 발생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

3. 미첨부 사유

가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(제3조제1항제1호)

나. 추계결과 ≙ 900,000천원

-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80,000천원임

- 추계의 전제

- 서울시 행정국 인력개발과 자료 「난임 직원 시술비 지원계획」을 준용하여 만20~49세의 기혼 남녀직원을 지원 대상으로 하여 추계 (남자 직원과 그 배우자의 연령대가 같다고 전제)
- 지원 대상자의 수는 추계기간 동안 변동하지 않는 것을 전제
- 비용은 2019년부터 발생하고 추계기간 이후에도 계속 발생
- 물가상승률 미반영

다. 상세 비용추계 결과

- 총 비용(합계) ≙ 900,000천원 (연간 180,000천원)

(단위 : 천원)

구분	연도	1차년도	2차년도	3차년도	4차년도	5차년도	합계
		(2020)	(2021)	(2022)	(2023)	(2024)	
세입	-	-	-	-	-	-	-
	소계(a)	-	-	-	-	-	-
세출	제7조 제14호 (소속 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의 난임 시술비)	180,000	180,000	180,000	180,000	180,000	900,000
	소계(b)	180,000	180,000	180,000	180,000	180,000	900,000
□ 총 비용(b-a)		180,000	180,000	180,000	180,000	180,000	900,000

○ 소속 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의 난임 진단에 의한 시술 지원비

- 연간 시술 지원비 ≙ 180,000천원

- 180,000천원 = 인원 × 체외수정 신선배아 4회 시술비 평균비용
= 60명 × 3,000천원

※ 자료 : 서울시 행정국 인력개발과 「난임 직원 시술비 지원계획」의 난임 인구 추정 방식 및 난임 시술비 준용(2020년부터 지원 계획)

【참고1】 서울시 난임 인구 비율

(단위 : 명, %)

가임 여성 (A)	난임 여성 (B)	난임 인구 비율 (B/A*100)
2,474,970	33,746	1.36

주: 서울시 가임 여성인구는 만15~49세의 여성을 기준으로 함(2017년 기준)

자료: 서울시 행정국 인력개발과

【참고2】 우리 시 난임 직원 추정 수

(단위 : 명)

구 분	난임직원(배우자) (A*1.36%)	계 (A)	20대	30대	40대
여 자	28	2,045	33	810	1,202
남 자	32	2,368	10	584	1,774
합 계	60	4,413	43	1,394	2,976

주1: 지원 대상자 수는 우리시 직원(사업소 포함) 중 인사 전산 상 기혼 남녀 직원(만20세~49세)으로 추출

2: 서울시 난임 인구 비율 1.36% 적용하여 추정

자료: 서울시 행정국 인력개발과

4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

담 당 관 남승우

사업평가팀장 이정수

주 무 관 백소영

☎ 02-2180-7954

e-mail : thdud36@seoul.go.kr